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11. 4(월) ~ 11.15(일) <14일간>

※ 제290회 정례회 : '19. 11. 1(금) ~ 12. 20(금) <5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인 제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행정5급 김 성 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 대 호	전문위원 오 정 균
”	더불어민주당	이 경 선	행정6급 이 상 연 행정6급 안 현 속
위 원	더불어민주당	고 병 국	시설6급 김 정 현
”	”	김 재 형	입법조사관 임 경 속
”	”	김 종 무	입법조사관 최 정 희
”	”	노 식 래	입법조사관 윤 은 정
”	”	박 상 구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사무운영(1명) 박 영 신
”	”	신 정 호	입법지원관 한 민 재
”	”	이 상 훈	김 다 운
”	”	임 만 균	송 명 희
”	”	정 재 웅	최 지 현
”	자유한국당	이 석 주	이 영 실 김 영 광
			○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5. 일정 및 장소 (안)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9. 11. 4(월) 10:00		도 시 재 생 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9. 11. 5(화) 10:00		도 시 계 획 국	"	
2019. 11. 6(수) 10:00		공공개발기획단	"	
2019. 11. 7(목) 10:00		주 택 건 축 본 부	"	
2019. 11. 8(금) 10:00		도시공간개선단	"	
2019. 11.11(월) 10:00		지 역 발 전 본 부	"	
2019. 11.12(화)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9. 11.13(수) 10:00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19. 11.14(목)	10:00	도 시 재 생 실 주 택 건 축 본 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 확인점검
	15:00	도 시 계 획 국 지 역 발 전 본 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2019. 11.15(금)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 방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재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노들섬 명소화,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주거지보전, 리모델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도시재생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계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거점 육성,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및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 ◦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 ◦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건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주택건축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지역발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지역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공간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괄건축가 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사항 ◦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관한 사항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공 공 개 발 기 획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신이동수단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한강4대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018, 2019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 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201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325	119	117	89
도 시 재 생 실	59	27	17	15
도 시 계 획 국	34	15	6	13
주 택 건 축 본 부	52	22	25	5
지 역 발 전 본 부	51	9	27	15
도 시 공 간 개 선 단	46	15	12	19
공 공 개 발 기 획 단	14	2	11	1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69	29	19	21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 사항 119건

[도시재생실] — 27 건

1. 사직2구역의 경우처럼 방침이나 정책방향만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는 앵커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사직2구역의 앵커시설 매입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이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볼 것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촉직 직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등 노동법 관련 문제 없도록 조치할 것
3.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제·업무분장·인사·복무 등에 있어 상당부분 센터 내규로 정하는 등 자율 권한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는 방만한 운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의 대외활동의 경우 감사자료와 센터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상이함. 미신고 등 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18~'19년 디자인 감리 실시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디자인 감리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
6.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인력 채용시 해당 지역 우대조항을 추가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역량있는 지역 전문가가 채용 및 양성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7. 도시재생기업 모집 및 선정시 응모자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

8. 도시재생사업 홍보방법에 대해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강구 할 것
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규모에 걸맞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0. 전통시장 연계형 주거지재생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시범사업 희망지 사업기간 변경 등 공모내용의 임의 변경, 가이드라인 부재, 절차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 시정하고, 희망지 사업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재검토할 것
11.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파견 코디네이터의 근무역량 평가 및 코디네이터의 업무 적합성에 대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2. 도시재생 거점공간, 앵커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할 것
13.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
14. 감사자료 중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 등의 오류가 많음. 감사자료, 예산자료 작성시 내용, 금액 등에 오류가 없도록 할 것
15. 소규모주택정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
16. 서울가꿈주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자치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건수를 늘리는 등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결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성원 수 및 인력구조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변경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되도록 하고, 도시재생기금 편성 및 집행 시 포괄규정에 의한 집행을 최소화 할 것
18.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보고회에 유명 아나운서나 개그맨 등 연예인 섭외로 전체 사업비 대비 과도한 행사비가 지출되었는데 자칫,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19. 서울시 건축자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한옥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한옥매입 편중 현상을 시정할 것. 서울시 한옥 매입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의 방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20. 매입한 한옥의 경우 대부분 공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음. 활용용도에 있어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선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21. 용역 계약이 금액 변경 없이 무단연장 되는 사례가 많은데 부득불 용역기간 연장 등 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할 것
22. 용산 Y-Valley 현대차 미래연구소 부지와 관련하여 유관 실국(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차원보다는 서울의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활용도를 생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3. 정비사업 해제지역 중 신길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4. 빈집재생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맹지, 소규모 필지 등 건축이 불가

- 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 매입을 지양하고 매입기준에 맞는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25. 남산 예정자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첫 단추인 계획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6. 세운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들의 활동 효과에 대해 점검할 것
 27. 세운재정비촉진 사업 노포 보존을 위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사정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도시계획국] — 15 건

1.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부터 시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공람도서의 전자열람 방안 마련할 것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열람도서 확인 및 의견 제진하는 방안 강구)
2. 용역보고서 비공개가 과도한 수준으로, 용역보고서 비공개 대상 및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 전환 등을 포함하여 용역보고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할 것
3.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입법 취지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장기미집행학교에 대해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대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개

정이 요망되며,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철도시설 등 저축으로 지하공간내 건축행위가 불가한 구역에 대하여 철도로 보상시 시재정 부담이 클것이므로 도시계획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관계부서 협력하여 검토할 것

7. 법정계획(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음에도 부동산 상황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재건축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해 조속히 결정할 것(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8.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등 필요한 시설들이 대량 해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치구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 강북구 우이동 지역의 현장 실사 및 관리계획변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할 것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구체적, 연도별 보상계획 마련할 것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에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벤처조성사업 예정인 낙성대 인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2. 바닥조명광고, 아파트 외벽 현수막 등 법의 사각시대 또는 편법적 이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 법령 제·개정 건의 또는 규정 개정 등 입법조치 검토 바람

13.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가 비공개로 되어 있음.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어야 하는데 공정한 시정을 위해 일부라도 공개여부를 검토할 것
14.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시정이 안되므로 향후 중개업자의 교육 등을 통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15.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학계(교수, 연구원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기술사/건축사 등 실무분야 전문가 위촉 증진 필요

[주택건축본부] — 22 건

1. 추가8만호 공급관련, 재생에서 추진 중인 빈집 매입실적이 저조하고 매입한 빈집도 주택공급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입정책과 활용방향 등에 대해 주택건축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
2. 추가8만호 공급과 관련하여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데, 특히 우려되는 민간공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간 점검 및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할 것
3.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접목중인 해외 사례의 경우 본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선행 연구도 미흡함. 기술적인 가능성에만 매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정신과 철학이 사업에 담기도록 할 것

4. 공개공지에 일부 담을 쳐 놓은 곳이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사유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개공지 관리를 위한 용역은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함. 단속위주가 아닌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실행력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6. 공개공지 사유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7.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표한 시기에 끝날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용역 등 본부 수행 용역에 있어 용역내용과 발주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되는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예산심사에서 문제점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할 것
9.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관련 사실혼 부부에 대한 확인방법이 명확하지 않는데 예산 누수가 없도록 보완할 것
10.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관련 금융지원 이차 보전 등 자산기준 없이 소득기준만으로 지원하는 건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저소득, 저자산 신혼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유발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1. 서울주거포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관리비 부분도 포털에 포함하여 주변 관리비를 하향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시민홍보 강화할 것

12.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경쟁률의 차이가 큰데 소득분위 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학생과 청년을 구분 모집하는 것을 검토할 것
13.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면적이 좁은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을 공유(쉐어)하는 것 등에 대한 기준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4.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저층주거지 신축건물들의 불법건축 사례가 많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단속위주 관리보다 근본적, 사전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나 대책을 강구할 것
15. 사회주택사업자 재무구조 부실화는 사업자 선정시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리스크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음.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회주택 재무구조 평가개선(안)'에 사회주택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임차보증금 반환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16.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회주택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정업체가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기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으로 시정 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한 양성화 등 위반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 할 것
18. 출연금이 연 3백억 정도 되는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서울연구원이 수행해야하는 분명한 사유와 함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별도 과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수행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할 것

19.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결과보고서 내용 부실, 용역수행 교수 논문과 유사, 1차 용역 결과보고서 2차 용역 착수보고 동시 실시, 일부 용역사의 경우 동기간 다수의 용역 수행 등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의뢰 등 시정조치 할 것
20.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용적률 등 법규상 문제점 해결 및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할 것
21.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불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
22. 도시정비법 부칙 해석과 관련하여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구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일몰제 적용 관련 부칙 개정을 검토 및 정부에 요청할 것

[지역발전본부] — 9 건

1.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유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 풀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2.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동북4구, 4.19)의 위촉직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방안을 강구 할 것(도시재생실과 협의)

3. 구 의료원 부지는 GBC와 연계하여 강남 도심으로서의 기능 유치가 필요하므로, 국제교류업무지구 특성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사업을 철회하고, 지구단위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각종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중 특정인 편중 현상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 할 것
5.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업무 목표와 방향,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센터 인력 및 업무를 재구성 할 것
6. 올림픽주경기장 수익모델 발굴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위원들의 교체를 강구 할 것
7. 플랫폼 창동 61의 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8. 플랫폼 창동 61 운영과 관련하여 패션디렉터 선정 등 지역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 선정 재검토 할 것
9. 용역 계약이 금액 변경 없이 무단연장 되는 사례가 많은데 부득불 용역기간 연장 등 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15 건

1. 마을건축가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의 건축가와 타 지역사회의 건축가 위촉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민과 마을건축가, 자치구, 집행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구성.

운영방안 도출할 것

2. 제2회 비엔날레의 성과와 한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회 비엔날레가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
3. 관람객 수의 과학적인 정확한 측정과 전시작품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할 것
4. 비엔날레 전담 조직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5.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사전 검토 등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 확대 방안 검토시, 그 동안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 운영 및 전반적인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것
6.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민간단체 회원의 편중성을 경계하고 민간단체 대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위축을 확대 할것
7. 설계 공모 심사에 있어 공정성/익명성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및 기준 마련할 것
8. 도시건축센터에 열린위원회 회의실 조성(도시계획국)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시장방침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비한 도시건축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바람
9. 도시건축전시관과 성공회 마당 사이에 유리가림막이 놓여 있는데 통합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0. 총괄건축가의 임기 만료 후 일정기간 공모 참여 제한을 검토할 것
11. 서울건축포럼 지원 근거는 조례에 담기에 적절하지 않음. 공익적

-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면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하므로 검토할 것
12. 잠실주공5단지 국제설계공모 참가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하여 조속히 지급토록 할 것
 13.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업체 선정 시 자격조건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향후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하도록 조정할 것
 14. 고덕강일 설계공모 같은 잡음이 없도록 설계공모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5.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활동성과를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DB화 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2 건

1. 「서울시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폐지 지적에 대한 사후 보고가 없었으며, 향후 보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조례의 존치사유와 기금의 목적, 존폐여부에 대한 상황을 신속히 협의하여 보고할 것
2. 용역입찰 관련, 올해 유독 수의계약이 많았으므로 ‘서울시 입찰공고란’에도 공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 및 일반경쟁을 강화하여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29 권

1. SH공사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처벌, 관리자 연대책임 등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매뉴얼을 개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징계심위위원회에서 징계수준을 감경할 수 없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구성 및 방법 등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3.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개최 시 여성 위원의 의무 참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2018.11.21.자 처부장급 보직해임자 직급보조비 변경 적용안에 따라 보직해임 직원과 직무대리 직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였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직해제 조치가 위법일 경우에 한해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SH공사 스스로 당시 인사발령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직급보조비를 직무대리자와 함께 중복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할 것.
5.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 대상부지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
6. 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통해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청신호 건축가의 사전 자문절차를 의무화함에 따른 과도한 설계비 책정과 추가비용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용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7.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단가보수업체에 대해 단가보수

리그제를 도입·시행해왔으나, 제도 실시 이후 지역별로 한 업체에게만 일감이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리그제 시행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도시행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구룡마을 선이주자에 대한 임대료 할인과 토지주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9.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골조공사 불법재하도급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 할 것
10.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골조공사 재하도급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사건 축소, 은폐 의도로 보일수도 있는바,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1. 지속적인 불법하도급 문제가 자체감사에 의해 걸러지지 않는 것은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기능을 재정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 또는 조사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2.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사건연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13. 2015년 이후, 공사 정보공개율이 급격히 낮아졌는데 열린행정을 펴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4.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해외

사례들은 서울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재실시할 것

15.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 있는 해외사례들에 대해 적용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당위성과 사업 철학, 시대정신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보완할 것
16.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반영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행복주택 불법 전대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거주자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8. 빈집 매입 시 작은 평수의 빈집을 매입하여 건폐율, 용적률 확보가 되지 않고, 막다른 도로가 있는 주택, 맹지도 매입했는데 세금 누수가 없도록 빈집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19.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과소필지로 분할·수의계약하는 등 특정인(인접토지주)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된바, 아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 1989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된적 없는 「분양규정 시행내규」 개정 검토
 - 과소필지 매각 후 지구계획 부적정 변경(공공공지→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사실확인

- 관련 직원 징계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 검토
 - 유사사례 발생 여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공사 자체 감사 및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20.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시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가 있었는데 그 이후 마련된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1.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퇴직공무원 및 전 SH공사 임원들의 관례적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제한기관으로 신청할 것.
 22. 2018년도 토지보상 비위직원의 채권회수가 현재까지 미완료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채권회수를 완료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사의 재정보증보험 납입액 할증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대외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부정적 효과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3.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요 부서 간부가 감사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4. 공사 직원의 예산(공금) 유용 제보가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수시·특별 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실의 역할수행을 철저히 할 것
 25. 2016년 이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

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6. 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는데 용역비 쪼개기 등을 통한 수의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7.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비용대비 경제성, 발전 효율성, 추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정 협동조합에 공사물량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밝혀진바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선진노사문화 국외출장은 국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내규를 수정하고, 해외 출장시 공무국외활동 심의 및 결과보고를 내실화 할 것
29.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현실성을 고려한 공개조치 등을 실시할 것

나. 건의사항 117 건

[도시재생실] — 17 건

1. 사직2구역 보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사의 경우처럼 소규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과 같은 기간 내에 4개의 성격이 서로 다른 서울시 용역을 중복 수행함에 따른 용역결과의 질 저하 우려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의존도가 높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면 도시재생실에서 책임있는 사업운영의 노력을 보여주기 바람
3. 공공한옥 임대주택 마감재 등을 가능하면 외국산이 아닌 국산 자재로 사용할 것
4. 한옥전문가들에 대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옥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5. 도시재생기업의 육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영역(구청직영, 민간위탁 등)을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CRC 비즈니스 영역으로 전환하고,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준비를 위한 특화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활성화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도록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6. 지역재생전문관, 집수리 전문관, 골목길재생 현장 코디네이터 등 도시재생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력들의 신분 보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할 것

7. 도시재생실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획과 실행을 통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8. GTX-A 광화문역 설치와 관련하여 비용부담 및 역 신설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진행시켜 주기 바람
9.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생활유산을 미래유산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 보전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0.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관련 후속 진행사항(소송)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폭력적 불법 집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
12. 광화문광장 집회 천막 설치 방지를 위해 설치한 대형 화분으로 인해 시민들의 광장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범사업의 지방비(구비) 분담과 관련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 및 우리위원회와 잘 협의하여 주기 바람
14.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난개발 및 저층주거지의 노후화 심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예,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시티 재생 등) 방식을 강구해 주기 바람
15.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17. 백년다리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도시계획국] — 6 건

1.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발표내용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시건축혁신단 신설 및 조직을 보강할 것
 - 기간단축 위주의 혁신이 아닌 진정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사유로 발표가 보류된 용산·여의도 통개발 관련 계획을 조속히 발표 바람
3. 공항 실시계획인가(협의)권 회수와 관련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한위임 조정이 필요하며, 경기도(인천 등) 사례와 같이 공항 주변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더 이상의 국제선 증설은 안되며,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할 것)
4. 시가지 경관지구 내 한남IC 주변과 노선상업지역 필지에 대하여 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할 것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방법이 단속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의 방법(신규사업 등)을 통해 할 수는 없는 건지 교육 관련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6. 강북지역의 역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2종7층)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

[주택건축본부] — 25 건

1. 그간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을 억제해왔으나, 분양가상한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니 정비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2.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관련 청년1인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 다양한 정책방향 고려할 것
3. 현 주택정책이 과도하게 임대주택 공급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장기 저리 주택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방향을 검토할 것
4.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하철역 주변만 고집하지 말고 교통편이 용이한 곳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 정책의 방향전환을 검토할 것
5.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기자로 등록하여 다른 청년주택에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 신청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것
6. 청년월세와 같은 한시적 보조금 지원정책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등 지속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7. 정비사업 해제지역 중 도시재생으로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 대

- 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검토할 것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 공공제도, 정책적 금융 등에 대한 주민 컨설팅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9. 역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철도권이라는 용어와 비교하여 용어 정리를 검토할 것
 10. 용산, 여의도 일대의 정비사업 등 개발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선정과정에 특별점검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 일정이 늦춰지거나 더 이상의 정비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 해줄 것
 12.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수도여고 이전부지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둘러 줄 것
 13. 분양가상한제의 효과에 대해 여러 우려사항이 보도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혼선 발생 등 우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강남구를 비롯한 아파트 주택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
 14.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관련 사업들에 대해 주택건축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것을 검토할 것
 15. 노후 아파트 등 노후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 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지원 등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17.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저리용자주택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검토할 것

18. 건축의 제약(높이규제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모델 마련을 검토할 것
19. 그동안 주택공급을 주도해왔던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의 경우 소극적 관리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가 주축이되어 적극적 주택공급정책을 펼쳐줄 것
20.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 볼 수 있는 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1. 최근 재건축아파트 분양주택 임대사업자 통매각과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2. 인구, 세대, 주거생활 구성원의 변화와 독거, 요양노인 등 사회적 가족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2040 서울플랜'의 주거 부문 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23. 건축물의 소방, 가스배관, 냉난방, 오피수 시설 등도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내진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구역 내 주민갈등과 민원이 많은데 촉진지구로의 변경이 어려운 지역은 해제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진행중인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용역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공유 및 소통할 것
25.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데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원활히 할 것

[지역발전본부] — 27 건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지하공기질, 지하수 관리, 지반침하 등에 대한 리스크 사전 확인 및 점검 등 대응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할 것
2.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남권 발전계획에 대해 검토 보고 할 것
3. GBC개발과 관련하여 현대차의 사업 축소 및 해외펀드를 통한 사업자 변경 등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현대차 측과 책임준공에 대한 약속서나 협약을 체결할 것
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 및 국비와 지방비 분담 관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
5. GBC 개발과 관련하여 협약대로 공공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할 것
6. 창동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하여 서울대 병원과 관련 업체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7. 창동문화산업단지 관련, 준공이후 매각, 임대 등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전략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등 대처방안을 마련 할 것
8. 고양아레나(K-컬처벨리)와 비교하여 서울아레나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창동 문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하거나, 고양아레나, 의정부 아레나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것

9. 마곡산업단지내 입주계약 업체의 공사 미착공 시 대책 및 기한내 착공 유도 방안을 강구할 것
10.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시설 공실공유제 관련,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공유제 사업개시 5년 후, 산업용지를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공간 공유제의 지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
11. 마곡산업단지내 도시형공장 등록 공장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1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원화 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중랑천 장미축제 및 서울아레나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검토 할 것
13. 지역거점 발전전략의 실효성 확보 위해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것
14. 마곡지구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등 유사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15.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방식과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16. GBC 건립 공사 시 소음, 먼지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할 것
17. 서울창동아레나 건축물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디자인 등을 재검토해 볼 것
18. 창동차량기지, 수색역 철도차량기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의 타 시도 이전시 검토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선례

를 조사·보고 할 것

19.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관련, 고덕차량기지를 향후 개발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할 것
20.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1. 지역발전본부의 대규모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관련부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
2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므로, 건설사 입찰 의향에 대한 사전 파악 등 유찰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할 것
2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시 지하수 유출 및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할 것
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현대차 측의 공공기여분, 서울시 추가 부담분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강구할 것
25. 본부의 사업별 홍보관 실적 등 홍보관 설치와 운영의 효용성을 검토할 것
26.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한 관련계획 및 유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용역 및 사업과의 차별성을 기하도록 할 것
27.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발전본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 편중으로 인

한 과부하 때문은 아닌지 검토하고, 지역별 사업 안배를 적극 검토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12 건

1. 프로젝트 서울(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사업의 후속조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2. 비엔날레 행사 종료 후에도 작품을 아카이빙하여 지속적인 전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피드백을 강화할 것
3.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조직이 확대될 예정인데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잘 정비할 것
4. 건축정책위원 구성 시 위원 선정에 대한 대표성, 균형성을 고려할 것
5. 해외 우수 건축물 사례처럼 서울도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마을건축가에 기술사가 많이 위촉되도록 할 것
7. 제2회 비엔날레를 운영한 사무국 직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제3회 비엔날레로 전수 될 수 있도록 할 것
8. 비엔날레 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 할것
9. 현 사무국 직원의 운영능력과 경험이 제3회 비엔날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마을건축가 홍보와 관련하여 구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것

11. 지하유희공간 활용 사업, 고가하부공간 활용 사업,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
12.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의 선정 및 위촉 기준을 마련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11 건

1.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있는데 용도지역변경과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룬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것
2. 공공기여 및 도시계획용도변경(용도 폐지 등)에 대한 업무를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용도폐지 및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할 것
3.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사전협상제도 관련 조례개정(1만제곱미터→5천제곱미터)으로 대상지가 증가할 것이나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절차를 간소화하여 획기적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할 것
5. 서울입체복합도시 조성 용역 관련, 또 다시 사장되지 않도록 과업범

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타 실국 사업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

6. 공공토지자원 관리부서가 산재되어 적정부지 선정과 활용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넘어 관련부서, 의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과 공유 가능한 ‘공공 토지자원자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7. 효창공원 조성 사업 또한 공론화가 안될 경우 사업중단의 우려가 있을수 있는 바, 기재부 등 정부와의 협력 통해 보류 및 중단이 없도록 할 것
8. 효창공원 국제심포지엄에 많은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심포지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9. 공공개발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여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고(예:고덕양로원), 정원 25명 업무 재분석 후 조직 확대까지 고려해 볼 것
10.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사전협상신청 후 10년간 담보상태인 것처럼, 코오롱, 라이온미싱 등의 부지들도 장기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되, 메머드적인 서울의 상징물이 되도록 할 것
11. 유희부지 개발계획에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전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선제적으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비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19 건

1. 공사 콜센터 상담사 연차사용 제한 및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보도와 관련하여 개선조치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상담사들의 연차사용률이 저조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 줄 것
2. 중랑구 면목패션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이 패션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 가든파이브 및 마곡지구 등 공실률 완화를 위해 임대방식 다변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4.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건축공법을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에도 도입하는 로드맵 및 실행계획 마련하여 보고할 것
5.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SH공사가 공동체 주택을 전략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6. 영등포 디딤플라자 건립이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는데 시설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 등 대폭적인 계획 보완을 검토할 것
7. 공사 사옥이전과 관련 노조와의 합의를 선결해야 할 것이며, 이전 대상지의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검토를 실시할 것
8. 임대아파트 임대료 현실화 및 체납임대료 납입조치, 공사채 발행 규모 재검토 등을 착수하여 재무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9. 임대혼합 단지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특히 SH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 중인 단지들 대부분 관리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10. 관악 탈북모자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주거복지 제도 연계를 재점검 할 것
11. 임대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공급 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고, 공간활용 및 주민만족도는 낮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13. 공사 관리 주택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의 특성과 입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유휴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4.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분양수입의 감소로 인해 202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산업 중심의 비전 제시(선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15.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주요 현장점검을 각 지역센터별로 꼼꼼하게 실시할 것
16.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임대주택 유형통합, 대기자명부 마련 등 주거복지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7.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
18. 전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복리증진 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

19.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사항을 업무보고(계획)에 포함시키고, 향후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할 것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89 건

[도시재생실] — 15 건

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시장방침 제219호, '18.11.21.)
2. 흥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
3. 백년다리 구조 안전성 관련 용역, 검토자료 등
4. 사직2구역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업체 계약방식, 발주 당시 담당자(과장, 팀장 포함) 명단
5. 사직2구역 앵커시설 매입 위한 예산집행 현황 및 매입근거
6. 도시재생기업 지원 신청 제외조건인 '유사사업 지원 여부' 확인 자료
7.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 및 채용 현황자료 보완 제출
 - 전공, 약력, 공개여부 등
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현장지원센터 채용심사에서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
9.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용역결과
1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현장 활동가 자격기준 및 비용지급 관련 증빙서류
11.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코디 운영실적, 수당 지급내역 등

12.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13. 골목길 성과공유회 예산 세부 집행내역
 - 유명인 출연료
14.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역(재조사)
15. 빈집 현재 145호 매입하였는데 업무보고서에는 172호 매입 추진중으로 보고. 이에 나머지 27가구에 대한 매입근거 자료 (매입현황 포함)

[도시계획국] — 13 건

1.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하였으나, 주택공급확대 취지와 달리 상업지역 주거용 적률이 조례 보다 하향 결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주택 확보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할 것임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및 기준 등에 대해 보고 바람)
 - 예시) (천호) 접도조건(10m미만)
 - 주거용적률(임대확보시) : 250%(375%)
2. 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안 마련 시 위원회 보고 바람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도덕성·책임성 강화방안 보고

4.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및 교육실시 내역 제출
5.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자료 제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결과
 - 시범사업 선정시 자치구 수발신 공문 내역
6. 장기미집행 공원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근거 및 추진현황 제출
7. 왕궁아파트, 산호아파트, 현대연립 정비계획 심의 관련자료 제출
 - 심의쟁점, 심의내용, 당초·변경 비교표, 시·구간 수·발신 공문
8. 최근 3년 연도별 서울시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출
 - 2010~2012년 용역보고서 현황표
9.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및 기준 제출
10. '19년 용산 미군기지 버스투어 방문자 현황 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 관련 자료 제출
 - 장기미집행 학교용지별 관리방안
 -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변동자료
12.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현황 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제출

[주택건축본부] — 5 건

1. 정비사업해제지역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적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하기 바람
2. 임대주택 공급목표에 충실한 나머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 시설을 제공하는데 소홀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별 용역사 선정현황 제출
 4. 재난위험시설 D등급 현황자료 제출
 5.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정책 관련 경제적 효과 분석 근거 제출

[지역발전본부] — 15 건

1.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참석자 명단, 자문결과 등 제출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보고서 제출
3. 현대차와 서울시 간의 GBC사업 공공기여 이행관련 공문 제출
4. 현대차의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제출
5. 서울의료원 부지관련 강남구청 제안 용역결과 보고서 및 용역자문 결과 제출
6. 영동대로지하공간 복합개발 총괄계획단 운영 관련, 컨텐츠운영분과 회의 자료 구체적으로 제출(안전, 구체적 참석자 현황, 자문내용, 자문 결과 반영사항 등)
7.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의 명시이월 될 경우, 향후 계획 제출
8. 지역거점 발전전략과 최근 발표한 3대 거점 우선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활권 계획과의 연관성 및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 및 협의(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국)한 결과 제출
9. 우이동 가족캠핑장 보상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에 대한 대응방안 제출

10.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련, 연구용역 결과 제출
11. 4.19사거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대동천 일부구간 생태하천 보행로 조성절차 및 추진방안, 우이권역 주민협의체 구성 경과, 구성 현황, 향후 사업계획, 주민복합이용시설(앵커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12.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관련, 재해안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13.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및 사후 설계 관리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 제출
14. 마곡산업단지 내 '도시형공장' 등록 절차 및 상황관리 점검결과 제출
15. 플랫폼 창동61 자문위원 그룹에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패션디렉터 선정과정의 일체 서류(운영업체 제안서류, SH 승인 서류 포함)제출

[도시공간개선단] — 19 건

1. 도시건축전시관 직원 채용 시 일부는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는데 경위 등 확인할 것
2. 서울건축포럼 내용의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후 보고 할 것
3. 용산 고가하부 활용사업 설계안을 보고해 줄 것
4. 도시건축전시관 인력증가사유, 공개채용차수별 채용 현황, 퇴직자 현황 및 퇴직사유, 비공개 채용 사유 등의 자료 제출
5.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투자심사결과서 제출

6. 비엔날레 용역 2건에 대한 운영업체로의 도급 경위 및 사유 제출
7. SH 청신호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중복 명단 제출
8. 마을건축가 활동 수당 지급기준 및 활동 결과물 제출
9. 국내 도시건축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예산, 특성 등 비교) 제출
10. 도시공간개선단의 아카이브 로드맵 제출
11. 비엔날레 운영업체 현황자료 제출
12. 전시관 운영인력 20명에 대한 직급별 급여 현황 제출
13. 마을건축가 마을단위 사업 유형화 자료 제출
14. 공공성지도 사업 추진현황 제출
15.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설계안 제출
16. 혁신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제출
17. 마을건축가 매뉴얼 교육 관련 자료 제출
18. 전시관 개관행사 예산 집행내역 제출
19. 전시관 유급인력 증가 관련 자료 제출
 - 인력 증가사유
 - 공개채용 차수별로 채용 현황
 - 채용자 응시서류
 - 퇴직자 현황 및 퇴직사유
 - 비공개 채용 시 채용 상세경위

[공공개발기획단] — 1 건

1. 기 추진된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검토 후 현재 추진하려는 용역의 차별성과 현실화 계획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 21 건

1. 임대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높은 곳들이 있는데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수입자동차 보유자가 다수 있는데 소득, 재산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는 없는지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3.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별도법인 운영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4. 빈집자료, 매입근거 및 주소, 면적 등 현황자료(빈집기간 1년 이내 및 1년 이상 구분)
5. 2018년 131명 증원당시 증원배치계획과 현재 배치현황 비교표 표로 정리하여 제출
6. 역세권청년주택 인터넷청약관리매뉴얼
7. 서울시산하 공기업 정보공개율 자료
8. 임대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금액이 큰 이유 비교분석
9.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관련 유사 해외사례 중 가장 최근 성공적인 개발로 평가되는 해외사례

10. 인공지능 기반 주택사업 추진할 경우 기존의 법령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법령 검토 결과
11. 불법전대 실태결과보고서
12. LH, 경기, 5대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채용기준 등 비교 (직급, 직종별 구분)
13. 2019년 홍보관련 총괄예산 및 현황
14. 시민주주단 구성 및 운영(전문가 10명내역 및 인명별 예산 지출내역) 현황 자료
15. 시민주주단 창단식 소요예산 상세자료
16. 징계감경 규정 관련 자료
17. SH도시연구원 수의계약 현황
18. 영구임대주택 외제차 보유현황 자료
19. 청신호 건축가제도 운영근거 및 주요내용, 운영현황 등 자료
20. 청신호건축가 선정 심사자료
21. 용산구 보광동 감정평가 자료

8.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없음